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42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출산 전 임신기간까지 확대하고,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비과세하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대주 배우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하여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신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8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머목1)·2), 같

은 조 제5호아목4)]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까지의 기간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녀를 임신한 기간 중에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등의 경우 종전에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에 대해서도 위탁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퇴직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의 기타소득 과세 등(안 제12조제5호 차목 및 제21조제1항제28호 신설)

법인 등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장에 종사하였다가 퇴직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할인하여 제공함으로써 그 퇴직자가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퇴직자 본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받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법인의 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 취득 관련 의제배당 대상 조정(안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2 신설)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

주·사원이나 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해당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제1항)

주거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마.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조정(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등에 대한 연간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을 종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로 조정함.

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방법 개선(안 제52조제5항제3호, 안 제52조제7항 신설)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취학,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 세대주와 주거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청년의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안 제59조의3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청년이 연금계좌 중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함.

자. 장기거주 소득공제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 도입(안 제95조)

- 1) 종전에는 주택을 포함한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는 주택과 주택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주택을 제외한 건물,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물 및 토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장기 보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함.

- 2) 202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100분의 4부터 100분의 30까지로 하되, 202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거주기간별 공제율(100분의 4부터 100분의 30까지)과 보유기간별 공제율(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 중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함.
- 3) 202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100분의 16부터 100분의 80까지로 하되, 202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거주기간별 공제율(100분의 12부터 100분의 60까지)과 보유기간별 공제율(100분의 6부터 100분의 20까지)을 합산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 4) 2028년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5) 2029년부터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은 납세자별로 연간 10억원(2028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양도 주택별로 10억원(2028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차. 장기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확대(안 제103조제1항 단서 신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한시적 완화(안 제104조제8항)

1)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7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2028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각각 한시적으로 완화함.

2)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7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2028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각각 한시적으로 완화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소유하는 자”를 “소유하는 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머목1) 중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를 “출산 전 임신기간과 해당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까지의 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자녀의”를 “자녀(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호 처목1) 중 “제20조”를 “제20조, 제21조”로 한다.

제12조제5호아목4) 중 “자녀의”를 “자녀(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제21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 1) 퇴직한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퇴직한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 중 “제22호의2 및 제26호”를 “제22호의2, 제26호 및 제28호”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자기주식등”으로 한다.

1의2.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의제배당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당

가.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일 것

나.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받는 배당이 아닐 것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88조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⑤ 제2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21조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퇴직한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을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800만원”을 각각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8백만원”을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

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나.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인 업무용승용차: 1,000만원

나. 가목 외의 업무용승용차: 700만원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광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임대업에서”를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500만원”을 “7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500만원”을 “75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금액을”을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4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그 배우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으로 한다.

1. 제4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52조제8항 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제4항·제5항”을 “제1항·제4항·제5항·제7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59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를 “종합소득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한다.

제59조의3제3항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29에 따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직전 2개 과세기간에 이 호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은 300만원에서 직전 2개 과세기간에 이 호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나. 300만원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으로 한다.

제92조제2항제2호 중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제95조에 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등의 양도가 법인의 자기주식등의 취득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5조의 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라 한다) 전의 주택으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등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인 경우에는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인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한 공제율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양도일: 2029. 1. 1. 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1(양도일: 2028. 1. 1.부터 2028. 12. 31.까지)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3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6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7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9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11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1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13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15	15년 이상	100분의 30
--------	----------	--------	----------

표 2(양도일: 2029. 1. 1. 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표 2(양도일: 2028. 1. 1.부터 2028. 12. 31.까지)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2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3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3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4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54
10년 이상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60

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서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보유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외한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등인가 전의 토지 및 건물(주택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등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2. 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
3.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⑤ 제2항에 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납세자별 연간 한도액: 10억원(2028년 과세기간은 20억원)
2. 양도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별 한도액: 10억원(2028년 과세기간은 20억원).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억원(2028년 과세기간은 20억원)을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한도액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을 위하여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표에 따른 거주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한다.

1.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그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 다만,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이 3년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외에 임대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하되,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 제2항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합산한 공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그 한도로 한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2. 제1호 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외에 그 조합원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거

주하지 못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공사기간”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하되, 해당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 제2항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202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말하며, 그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2의 공제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합산한 공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그 한도로 한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2. 제1호 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제95조제9항(종전의 제3항)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 변경한 후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양도일 기준으로 용도변경 전 주택이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 보

유한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제95조제12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을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사용한 날”을 “사용하지 아니한 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한 날”을 “사용하지 아니한 날”로, “주택으로 변경한”을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변경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⑬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8항에 따른 공제율 적용 대상 신축주택 및 공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가업상속공제”로 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양도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거주주택”이라 한다)

의 양도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제1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천500만원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한다.

제10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장기거주주택을 양도하거나 장기거주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장기거주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의 계산 및 공제금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2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36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3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4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29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5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6,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5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5,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6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62퍼센트)
10억원 초과	5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65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8호에 따른 세율

제104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
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0)를 더한 세율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
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5)을 더한 세율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18조의8 단서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제118조의17의 제목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을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및 취득가액의 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18조의1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국외전출자로서 출국일 부터 5년 후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거주자가 해당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제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단서 중 “제8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제89조제1항제3호·제4호,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100분의 3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소득: 100분의 3

-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100분의 20

제155조의3의 제목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를 “(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156조의9제1항 중 “주식”을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로 한다.

제1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로, “자료”를 “자료(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 “주식등의 거래내역”을 “주식등에 대한 거래내역 및 배당금액 내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2호, 제95조, 제104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18조의8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2조제3호머목1)·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등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제12조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퇴직한 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호차목,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 및 제21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기주식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3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기주식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 등의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2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3호에 따른다.

제8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거주 소득공제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5조제2항에 따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양도한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9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5조제3항에 따른다.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제11조(주택의 용도변경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을 2026년 5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0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제10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 1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전출자가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거나 배당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 -----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 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 신설>	가. ----- ----- -----. 다만, 「농지법」 제 23조를 위반하여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1개의 주택을 <u>소유하는</u> <u>자</u> 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 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나. ----- <u>소유하는</u> <u>거주자</u> ----- ----- ----- ----- ----- ----- ----- ----- -----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 사.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러. (생략)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

-----.

--.

다. ~ 사. (현행과 같음)

3. -----

가. ~ 러. (현행과 같음)

며, -----

1) -----

----- 출산 전 임신
기간과 해당 자녀의 출생
일부터 2년까지의 기간
중 -----

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 ----- ----- --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u>자녀</u> 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 ----- ----- ----- ----- ----- ----- ----- <u>자녀(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의</u> ----- ----- -----
버. ~ 저. (생략)	버. ~ 저. (현행과 같음)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처. ----- ----- ----- ----- -----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u>제20조</u>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1) ----- ----- <u>제20조, 제21조</u> ----- ----- ----- -----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 할 것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사. (생략)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 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 1) ~ 3) (생략)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 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u>자녀의</u>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 액으로서 해당 자녀 1명 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 액 5) (생략) <u>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u>	5.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자녀(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의</u> ----- -----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
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
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
이 받는 수당

<신 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
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차. 제21조제1항제28호에 따
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퇴직한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퇴직한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
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생략)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 마. (생략)

9. (생략)

④ ~ ⑥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_____

가. _____

제22호의2, 제26호 및 제28
호-----

— — •

나. ~ 마.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단서 신설>

제17조(배당소득)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

-----. 다만,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신 설>

2. ~ 4. (생 략)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
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

금액은 제외한다.

1의2.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
득함에 따라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
산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
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자기주식등을 취득하
는 경우(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
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의하
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는 해당 주주, 사원, 그 밖
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 자기주식등-----

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
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
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생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신 설>

6.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의
제배당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당
가.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일
것
나.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
원으로 소각을 위하여 자

2. ~ 7. (생략)

<신설>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받는 배당이 아닐 것

2. ~ 7. (현행과 같음)

④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88조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⑤ 제2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⑥ (생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정하는 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1조(기타소득) ①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 2029년 12월 31일-----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

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나.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인 업무용승용차: 1,000만원

나. 가목 외의 업무용승용차: 700만원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
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
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
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④ · ⑤ (생략)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
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
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생략)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과
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2
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한 금액을 말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광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
로 받는 금품, 서화(書畵)·골
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제50조(기본공제)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300만원 -----
----- 750만원 -----

3. -----

----- 금액(이
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
라 한다)을 -----

⑤

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2. (생략)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5. (생략)

⑥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4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에서 그 초과하는

⑧ <u>제1항 · 제4항 및 제5항에</u> 따 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 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⑨ <u>삭 제</u> ⑩ <u>제1항 · 제4항 · 제5항 및 제8</u> 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 제”라 한다. ⑪ (생 략)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 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u>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그 배우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으로 한다.</u> <u>1. 제4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 두 충족할 것</u> <u>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u> ⑧ <u>제1항 · 제4항 · 제5항 및 제7</u> <u>항</u>----- ----- ----- ----- ----- ----- -----. ⑩ <u>제1항 · 제4항 · 제5항 · 제7항</u> ----- -----. ⑪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 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생략)

③ · ④ (생략)

제59조의2(자녀 세액공제) ① (생략)

[illegible][illegible]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현
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
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
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
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
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
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

<삭 제>

④ 제1항 -----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
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 퇴
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

100분의 15,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29에 따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

④ -----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직전 2개 과세기간에 이 호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은 300만원에서 직전 2개 과세기간에 이 호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

1. -----

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마. (생략)

2.·3. (생략)

④ ~ ⑪ (생략)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
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마.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생략)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u>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u>을 공제하여 계산 3. (생략) ③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u><후단 신설></u> 가. ~ 다. (생략) 4. ~ 6. (생략) ②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 <u>제95조에 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u>-----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 <u>이 경우 해당 주식등의 양도가 법인의 자기주식등의 취득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u>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라 한다) 전의 주택으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등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인 경우에는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인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한 공제율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양도일: 2029. 1. 1.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 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 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 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 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 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 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 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 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 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 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 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 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 의 36
10년 이상	100분 의 40	10년 이상	100분 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1(양도일: 2028. 1. 1.부터 2028. 12. 31.
까지)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 의 3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 의 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 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 의 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 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 의 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 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 의 6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 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 의 7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 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 의 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 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 의 9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 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 의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 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 의 11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 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 의 1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 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 의 13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 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 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 의 28
15년 이상	100분 의 15	15년 이상	100분 의 30

표 2(양도일: 2029. 1. 1.이후)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1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표 2(양도일: 2028. 1. 1.부터 2028. 12. 31.
까지)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 년 미만	100분 의 6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 의 12
		3년 이상 4 년 미만	100분 의 18
4년 이상 5 년 미만	100분 의 8	4년 이상 5 년 미만	100분 의 24

<신 설>

5년 이상 6 년 미만	100분 의 10	5년 이상 6 년 미만	100분 의 30
6년 이상 7 년 미만	100분 의 12	6년 이상 7 년 미만	100분 의 36
7년 이상 8 년 미만	100분 의 14	7년 이상 8 년 미만	100분 의 42
8년 이상 9 년 미만	100분 의 16	8년 이상 9 년 미만	100분 의 4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 의 1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 의 54
10년 이상	100분 의 20	10년 이상	100분 의 60

③ 제1항에서 “장기보유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보유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외한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등인가 전의 토지 및 건물(주택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등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신 설>

<신 설>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
2. 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
3.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⑤ 제2항에 따른 장기거주 소득 공제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

<신 설>

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납세자별 연간 한도액: 10억원(2028년 과세기간은 20억원)

2. 양도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별 한도액: 10억원(2028년 과세기간은 20억원).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억원(2028년 과세기간은 20억원)을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한도액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기거주 소득 공제액 계산을 위하여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같은 항목 표에 따른 거주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한다.

1.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그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신 설>

하여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 다만,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외에 임대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하되,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 제2항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합산한 공제율은 다

<신 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그 한도로 한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2. 제1호 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외에 그 조합원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공사기간”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공

제율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하
 되, 해당 공사기간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기간을 거주기간으
 로 보아 제2항 표에 따른 거주
 기간별 공제율(202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표에 따른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말하며, 그 공
 사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100분
 의 2의 공제율로 한다)을 적용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합산한
 공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그 한도로 한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
 택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2. 제1호 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
 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⑨ -----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

-----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⑩ 제2항 및 제3항-----

-----.

-----.

⑪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 변경한 후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양도일 기준으로 용도변경 전 주택이 제104조제7항 각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

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⑫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이 아닌 자산----- 사용
----- 사용하지 아니한 날-----
----- 사용하지 아니한 날-----

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 ③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
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
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
로 한다.

1. 2. (생략)

⑤ (생략)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
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

-----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변경한 -----.

⑬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의 계산, 제8항에 따른 공제율
적용 대상 신축주택 및 공사기
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가업상속공제-----

-----.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②·③ (생략)

<신설>

--. 다만, 제1호의 양도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거주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제1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천500만원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장기거주주택을 양도하거나 장기거주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 (1억5천만 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
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
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2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36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3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4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29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5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6,706만원 + (1억5천만 원 초과액 × 5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5,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6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62퍼센트)
10억원 초과	5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65퍼센트)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
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
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 제8호에 따
른 세율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 (5,000만 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만원 + (8,800만 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 (1억5천만 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 원 초과액 × 55퍼센트)

10. ~ 14. (생 략)

②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후단 삭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0)를 더한 세율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5)을 더한 세율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

	<u>득세를 납부한 국외전출자로서 출국일부터 5년 후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거주자가 해당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u>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략)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	② ----- ----- ----- ----- ----- ----- ----- ----- ----- ----- ----- ----- -----

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략)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 -----

----- 제89조제1항제3호·제4호,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3조제1항 단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발생하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 100분의 3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소득: 100분의 3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4. ~ 8. (생략) ② ~ ⑧ (생략)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집합투자재산</u>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u>주식</u>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기 위하여 자	<u>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100분의 20</u>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 ----- ----- ---- <u>집합투자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u>----- -----.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 ----- ----- ----- ----- ----- <u>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u> ----
---	---

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 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 자료(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

-----.

1. · 2. (생략)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u>주식등의 거래 내역</u>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생략) <u><신설></u> 나.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소득세</u>----- ----- <u>주식등에 대한 거래내역 및 배당금액 내역</u>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 <u>서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 의 대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 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등</u> 다. (현행 나목과 같음)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606억원

(단위: 억원)

구 분 \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해	당	없	음		
지출								
	소 계(A)							
수입	농지법을 위반한 논·밭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 (§12(2)가)		추	정	곤	란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 제외 (§12(2)나)		추	정	곤	란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12(3)머1))		추	정	곤	란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12(3)머2), §12(5)아4))		추	정	곤	란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등 (§12(5)차, §14, §21)		추	정	곤	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외(§12(5)자)		추	정	곤	란		
	자기주식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17②, §94)		추	정	곤	란		
	자기주식 취득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17③)		추	정	곤	란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규정 정비(\$17⑤)		추	정	곤	란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25)		추	정	곤	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33의2)		△1	△2	△3	△4	△10	△2.5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50)		△313	△313	△313	△313	△1,252	△31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52④, \$52⑦)		△107	△107	△107	△107	△428	△10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52⑤)		229	458	687	2,975	4,349	1,087.3
출산·입양세액공제 적용 종료(\$59의2)		1,312	1,312	1,312	1,312	5,248	1,312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59의3①)		추	정	곤	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 지원(\$59의3③)		추	정	곤	란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59의4)		186	186	186	186	744	186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95)		추	정	곤	란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103)		추	정	곤	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상향(\$104①)		추	정	곤	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104⑦)		추	정	곤	란		
국외전출자의 주식 취득가액 특례 신설 (§118의17)		추	정	곤	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129)	△9,257					△9,257	△9,257
소 계(B)	△9,257	1,306	1,534	1,762	4,049	△606	△121.2
총 비용(A-B)	9,257	△1,306	△1,534	△1,762	△4,049	606	121.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2조 제2호가목 (비과세소득)	농지법을 위반하여 논·밭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논·밭 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2	제12조 제2호나목 (비과세소득)	비거주자의 국내 보유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3	제12조 제3호머목1) (비과세소득)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의 지급 시기를 출생일 이후 2년 까지의 기간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4	제12조 제3호머목2) (비과세소득) 제12조 제5호아목4) (비과세소득)	6세 이하 위탁아동도 6세 이하 자녀와 동일하게 기업이 근로자에 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5	제12조 제5호차목 (비과세소득)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21조 (기타소득)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퇴직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할인금액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6	제12조 제5호자목 (비과세소득)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7	제17조제2항 (배당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자기주식 취득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8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이익소각하는 경우만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이중과세 조정 배제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9	제17조제5항 (배당소득)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에 대해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10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 및 수입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적용기한이 종료되면 증가할 수 있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1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연간 손금산입 한도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
12	제50조 (기본공제)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현행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에서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5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함
13	제52조 제4항 및 제7항 (특별소득공제)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함
14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함
15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하던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규정을 적용 종료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함
16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청년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17	제59조의3제3항 (연금계좌세액 공제)	연금계좌 추가납입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전환금을 포함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18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의 범위를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함
19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개편하면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20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21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을 상향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측면 존재
22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23	제118조의17 제5항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주식에 대한 전출세를 납부한 국외전출자가 전출 5년 이후에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할 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출시 시가로 조정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측면 존재
24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연말정산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제외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2로 인하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함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12조 제2호가목 (비과세소득)	×	농지법을 위반하여 논·밭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2	제12조 제2호나목 (비과세소득)	×	비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 규모 등 추정 곤란
3	제12조 제3호머목1) (비과세소득)	×	기업이 근로자 임신 기간 중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4	제12조 제3호머목2) (비과세소득) 제12조 제5호아목4) (비과세소득)	×	기업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5	제12조 제5호차목 (비과세소득)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21조 (기타소득)	×	기업이 운영하는 퇴직자 할인제도의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6	제12조 제5호자목 (비과세소득)	×	지급수당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7	제17조제2항 (배당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기주식 취득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8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	이익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9	제17조제5항 (배당소득)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에 대한 의제 배당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10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으로 감소한 세액을 별도로 추정하기 곤란
11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12	제50조 (기본공제)	○	
13	제52조 제4항 및 제7항 (특별소득공제)	○	
14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	
15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	
16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17	제59조의3제3항 (연금계좌세액공제)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할 금액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18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19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각 주택의 양도차익 규모, 양도 주택 수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20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각 주택의 양도차익 규모, 양도 주택 수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21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22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	각 주택의 양도차익 규모, 양도 주택 수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23	제118조의17 제5항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전출 5년 후 재전입자의 주식 매각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24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6.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농지법을 위반한 논·밭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12(2)가)
 - **세수증 : 추정곤란**
 - 농지법을 위반하여 논·밭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 제외(§12(2)나)
 - **세수증 : 추정곤란**
 - 비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 규모 등 추정 곤란
-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12(3)머1))
 - **세수감 : 추정곤란**
 - 기업이 근로자 임신 기간 중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12(3)머2), §12(5)아4))
 - **세수감 : 추정곤란**
 - 기업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규모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등(§12(5)차, §14, §21)
 - **세수증 : 추정곤란**
 - 기업이 운영하는 퇴직자 할인제도의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외(§12(5)자)
 - **세수증 : 추정곤란**
 - 지급수당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자기주식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17②)
 - **세수증 : 추정곤란**
 -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기주식 취득 규모 등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자기주식 취득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17③)
 - **세수증 : 추정곤란**
 - 이익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규정 정비(\$17⑤)
 - **세수증 : 추정곤란**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25)
 - **세수감 : 추정곤란**
 -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으로 감소한 세액을 별도로 추정하기 곤란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33의2)
 - **세수감 : △10억원(연평균 △2.5)**
 - 전체 업무용 승용차 신고 대수 및 소득세의 실효세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50)
 - **세수감 : △1,252억원(연평균 △313)**
 - 해당 소득구간의 인원, 기본공제 금액, 과세표준 기준 소득세 실효세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52④, \$52⑦)
 - **세수감 : △428억원(연평균 △107)**
 - 전체 가구 대비 유배우자·맞벌이·비동거 가구의 비중, 소득공제 실적, 과세표준 기준 소득세 실효세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52⑤)
 - **세수증 : 4,349억원(연평균 1,087.3)**
 - 공제대상 이자상환금액, 근로자의 과세표준 기준 소득세 실효세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출산·입양세액공제 적용 종료(\$59의2)
 - **세수증 : 5,248억원(연평균 1,312)**
 - 조세지출예산서상 출산·입양 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추정
-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59의3①)
 - **세수감 : 추정곤란**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 지원(\$59의3③)
 - **세수감 : 추정곤란**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할 금액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59의4)
 - **세수증 : 744억원(연평균 186)**
 - 전체 유아 수, 교육비 세액공제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95)
 - **세수증 : 추정곤란**
 - 각 주택의 양도차익 규모, 양도 주택 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103)
 - **세수감 : 추정곤란**
 - 각 주택의 양도차익 규모, 양도 주택 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상향(\$104①)
 - **세수증 : 추정곤란**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104⑦)
 - **세수감 : 추정곤란**
 - 각 주택의 양도차익 규모, 양도 주택 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 국외전출자의 주식 취득가액 특례 신설(\$118의17)
 - **세수감 : 추정곤란**
 - 전출 5년 후 재전입자의 주식 매각 금액 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129)
 - **세수감 : △9,257억원(연평균 △9,257)**
 - 인적용역자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전해일	현원석	문경호	박홍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해일	044-215-4216	haeilj@korea.kr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5년간 606억원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9,257	△1,306	△1,534	△1,762	△4,049	606
○ 회계·기금 간 전입	-	-	-	-	-	-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	-	-	-	-
○ 기타	-	-	-	-	-	-
〈합 계〉	9,257	△1,306	△1,534	△1,762	△4,049	606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5년간 606억원(일반회계 606억원)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 중앙정부	9,257	△1,306	△1,534	△1,762	△4,049	606
○ 일반회계	9,257	△1,306	△1,534	△1,762	△4,049	606
○ ○○특별회계	-	-	-	-	-	-
〈 합 계 〉	9,257	△1,306	△1,534	△1,762	△4,049	606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총비용 606억원은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세법개정안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 등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2027년 이후에도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Ⅳ.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6년 7~8월	기획예산처	세입예산안에 반영

Ⅵ.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전해일	현원석	문경호	박흥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해일	044-215-4216	haeilj@korea.kr